

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408호
- 나. 제 안 자 : 이준형의원 외 9명
- 다. 제출일자 : 2019년 2월 1일
- 라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7일

## 2. 제안이유

- 서울시가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한 2012년 이후, 도시농업 활동 공간은 6배, 참여 인구는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나, 양적 확대가 한계에 봉착하고,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.
- 최근 들어 도시농업은 개인·가족 단위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, 재배작물과 공간의 다양성 및 창의성 추구, 여가·힐링 차원의 활동에서 교육·수익활동·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.
- 따라서 서울 도시농업의 전환기를 맞아 도시농업 활동주체들의 활동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

지원할 필요가 있음.

- 이를 위해 도시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, 공동체, 기관 및 단체 등이 서울 도시농업포털시스템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활동 수준 및 여건에 맞는 정보제공,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시장은 도시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, 공동체, 기관 및 단체 등을 서울도시농업 회원으로 가입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의2 신설).

### 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“서울 도시농업포털(가칭)”을 구축하여 도시농업 활동주체에 대한 회원관리와 함께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, 소통 공간 제공과 교육지원 등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.

#### 나. 도시농업 현황

-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도시농업법”)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·공간의

확보와 기반 조성,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음.

-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시·도지사는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(「도시농업법」 제5조).

<표 1> 도시농업 활성화 종합계획과 서울시 시행계획 비교

정부 종합계획	서울시 시행계획
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	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
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	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
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	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 계획
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	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
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	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
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	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
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

- 서울시는 2012년 도시농업 원년 선포 이후, 도시농업 2.0 마스터 플랜 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농업 활동공간과 참여 시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성장을 거두어 왔음.

- 실제로 도시농업 활동공간은 2011년 29ha에서 2018년 179ha로 약 6배 증가했고, 참여시민 또한 같은 기간 5배가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.

<표 2>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

- 도시농업 활동공간 : '11년) 29ha → '18년) 179ha (약 6배 증가)  
 - 도시농업 참여시민 : '11년) 125천명 → '18년) 625천명 (약 5배 증가)  
 - 도시농업 관련 기관·단체 : 165개('18. 12월말 현재)

합 계	도시농업 지원센터	전문기관·과정 양성기관	도시농업 공동체	도시농업 사회적기업	도시농업 협동조합	단체등록	
						비영리	사단법인
165개	5	6	16	15	96	13	14

- 금년부터는 이러한 도시농업 활동영역의 양적 확대를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“서울도시농부 등록제”를 추진하면서, 4억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.

<표 3> 2019년도 도시농부 등록제 관련 신규 예산 반영 현황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(개별사업)	예산과목	2018예산	2019예산	'18년 예산대비		비고
				증 감	증감율	
계			430,000	순증		
도시농부등록제 (포털 구축 운영)	전산개발비	-	150,000	순증		신규 구축
서울농부 등록제 홍보	사무관리비	-	30,000	순증		- 리플렛 제작(1500부) 10000천원 - 홍보부스 운영(4회) 20000천원
서울농부 등록제 운영	지치단체 경상보조	-	250,000	순증		도시농부 농자재 및 교육보조지원 = 100,000원×5,000명×50% =250,000천원

#### 다. 도시농업인 등의 체계적 지원(안 제12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도시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, 공동체, 관련 기관·단체 등을 도시농부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이들의 활동수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.
- 안 제12조의2제1항은 서울도시농업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으로 도시농업인, 도시농업공동체, 도시농업 관련 기관·단체 등(이하 “도시농업인 등”)을 정하고 있음.
- 이 중 개인 회원인 도시농업인은 「도시농업법」과 조례의 정의에 따르면, ‘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’(농작물 경작·재배, 수목·화초 재배, 곤충사육)이나 ‘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’으로 제한됨.
- 이 경우 도시농업을 직접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박람회, 교육 등에 참여하는 사람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도시농업인의 개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같은 조 제3항은 “서울도시농업포털시스템”의 구축 목적으로 “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”로 규정하고 있는 바, 회원관리로만 국한하기보다는 도시농업인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, 홍보, 소통, 교육지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.

- 이 밖에, 개정안이 도시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과 포털시스템 구축, 회원관리 등을 담고 있으므로 조의 제목을 ‘도시농업인 등의 체계적 지원’으로 하는 것보다 각 항의 내용을 종합한 ‘도시농업인 등의 회원 관리 등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.
- 한편, 현행 제20조(도시농업의 육성 지원)는 도시농업 전반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사실상 모든 시민에게 ▶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▶연구기술 개발과 시범사업 ▶교육연수사업 ▶박람회·생활경진대회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개정안이 특별히 회원으로 가입한 도시농업 활동주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므로, 일반시민에게 제공되는 제20조의 지원범위를 뛰어넘는 차별적이고 우월적인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.

담당조사관	연락처
이 시 우	02) 2180-8056

## <참고자료 1> 관련 법규

###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도시농업"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,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- 가.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
  - 나.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
- 다.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(양봉을 포함한다)하는 행위
2. "도시지역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3. "도시농업인"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"도시농업관리사"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, 교육,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·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,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.

**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)**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
2.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

3.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

4.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

5.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

6.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

7.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**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20조(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)**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공영도시농업농장, 민영도시농업농장 등의 임대 정보 및 임차 신청

2.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·농자재 등의 제공·교환·폐기·회수 등에 관한 정보

3.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및 신청

3의2.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

4. 도시농업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



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## 「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**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**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
2.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
3.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 계획
4.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
5.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
6.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

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12조(실태조사)**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20조(도시농업의 육성 지원)**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,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
2.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
3.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
4.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
5.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

6.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
  7. 서울시 인접 시·군에 서울시민을 위한 주말농장(텃밭)조성 사업
  8.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따른다.
- ③ 제1항의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